

의안번호	2200156
의 퇴 인	김기현의원
회 답 일	2024.06.19.
추계번호	24C0425
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2 (분원의 설치 등)	▫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음(제1항) ▫국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▫기획재정부장관은 분원 설치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의2 (분원의 설치 등)	▫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분원의 설치 등(안 제3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이 설치된 사례는 없으며, 보건복지부는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“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” 사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·이전비를 지원하고 있음(2024년 예산 기준 24억 9,400만원¹⁾)

1) “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”(2005.05.25.) 수립 시 국립의료원(현 국립중앙의료원)을 특수법인으로 전환, 신축·이전 추진이 결정되었으며, 2014년에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 추진되었음. 2024년 예산에는 설계비, 감리비 등이 포함되며, 부지 매입비, 건설보상비 등은 2023년까지 집행 완료됨

- 현행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출연금(2024년 기준 569억 5,300만원)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안 제3조의2제2조에서 분원 설치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경우 설립비와 운영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재량규정인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분원의 설치 여부, 설치 지역 및 규모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, 개정안은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17개 시도 중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유일하며, 시도별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설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

[표 1] 시도별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현황(2023년 연도말 기준)

(단위: 개소)

	상급종합병원	종합병원	병원
서울	1	9	13
경기	1	11	18
인천	0	3	5
부산	1	3	5
대구	2	2	5
광주	1	2	5
대전	1	2	5
울산	0	0	1
세종	0	1	0
강원	0	8	10
충북	1	2	8
충남	0	4	6
전북	1	2	9
전남	1	3	18
경북	0	5	19
경남	2	3	16
제주	0	2	3
합계	12	62	146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